

[미국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과세 시행에 따른 한화에너지인프라MLP펀드 대응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화에너지인프라MLP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MLP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 이슈가 발생하여 고객님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한화에너지인프라MLP 펀드는 12월 이내 펀드에서 보유중인 에너지인프라MLP를 에너지인프라 C-corporation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회사)으로의 교체를 통해 신규 세금 부과 이슈에서 벗어날 계획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세법 1446(f)에 근거하여 외국인(Non US) 보유한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 대해 신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PTP는 통상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Master Limited Partnerships(or MLPs)으로 지칭하는데 새로 시행되는 세법은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가 PTP 투자시, 미국 세법 1446(f)에 의거, 보유기간이나 이익,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화에너지인프라MLP 펀드는 2014년 안정적 사업모델로 투자가치가 높은 에너지인프라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설정 되었습니다. 에너지인프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형태는 크게 MLP와 C-corp가 있는데, 최초 펀드 설정 시에는 MLP 형태를 띤 기업들이 법인세 면제를 통한 높은 배당 수익률로 투자 메리트가 충분하여 펀드에서는 MLP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이후 에너지인프라 산업의 변화에 맞춰 2017년부터는 일부 에너지인프라C-corp 에도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PTP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로 MLP가 가지는 투자 메리트가 크게 낮아져 펀드는 앞으로는 기존 보유중인 에너지인프라 MLP를 모두 매도하고 에너지인프라 C-corp을 중심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2022년 11월 말 기준 MLP 64%, C-corp 25% 편입). 이를 통해 한화에너지인프라 MLP 펀드는 PTP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 이슈에서 벗어날 계획입니다(향후 에너지인프라C-corp에 대해서도 신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방안 마련 예정).

저희 한화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올 해 마지막 남은 12월 잘 마무리 하시고 늘 닥 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